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12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0.)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 추가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함.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생물소재의 안정적 보전과 지속적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야생생물 유전자원은행, 미생물 배양체은행, 야생생물 천연물은행, 야생식물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의 확보·배양 및 제공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배양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국립생물자원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양체를 현행법의 사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2)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 임명권자 변경

현행법 제7조는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

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함.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설립일	설립근거
1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67.11	한국수자원공사법
2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10.1	한국환경공단법
3		국립공원공단	'87.7	국립공원공단법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9.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		국립생태원	'13.1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0.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7		한국환경보전원	'23.12	환경정책기본법
8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7.12	민법 및 수자원법
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5.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8	
11		한국상하수도협회	'02.1	수도법

※ 출처: 환경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면서 공기업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은 각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의 임명권자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8조는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으로 감사 임명 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는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의 주체가 소관 주무부처라는 점과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감사 임명 사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부대의견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종자”를 “종자, 배양체”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2. 유전자원, 천연물, <u>종자</u> 등 생 물자원 소재의 확보 · 배양 및 제공 3. ~ 12. (생 략)	제5조(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 <u>종자</u> , 배양 <u>체</u> ----- -- 3.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생 략)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기획</u> <u>재정부장관</u> 이 임명한다. ⑥ (생 략)	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 <u>환경</u> <u>부장관</u> -----. ⑥ (현행과 같음)